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내산 신재생설비 우선사용 권고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02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1
1.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12)	11
2.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3조	13
3.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14
4. 최저효율제 개요	15
5. 탄소검증제 개요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7.
3. 회부연월일 : 2024. 8.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집적

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육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및 제12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② 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자에 대해 국내산 신·재생설비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③ 해당 설비 사용자에게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및 제12조제4항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u>7의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u>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u>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u>

현행	개정안
	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송전설비를 포함한다)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발전소등”이라 한다)를 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소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최근 주요국들은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제정¹⁾하여 태양광 및 풍력 설비 핵심 부품 등 친환경 산업의 제조역량을 높이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였고²⁾, EU는 2023년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³⁾을 제안하고,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⁴⁾을 통해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전략산업의 제조역량을

1) 2022. 8. 16.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으로 발효되었고, 조문별 구체적인 하위 규정을 순차적으로 발표함.

2)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의미와 쟁점 및 대응방안(이효영, 외교안보연구원 IFANS FOCUS, '22.9.)

3)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그린딜 산업계획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적으로, ① 규제 간소화, ② 자금조달 촉진, ③ 기술 역량 강화, ④ 해외협력 통한 공급망 다변화 등의 수단을 활용한 청정기술 산업 육성이 주요 내용이며, 탄소중립산업법 및 핵심원자재법 제정을 포함하고 있음.

4) 2023. 3. 초안을 발표하였고, EU 의회 승인을 거쳐 2024. 6. 발효되었음.

EU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표명⁵⁾하였음.

이에 비해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권고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등 신·재생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한 권고 규정을 두고 있으나⁶⁾, 미국 등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내 생산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⁷⁾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① 기본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② 발전소(송전설비 포함)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

5)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주요 내용과 시사점(황준석·장현숙, 한국무역협회 Trade Brief, '23.3.)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7)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발전 사업에서 부품의 국산 비율이 50% 이상 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국산부품 사용요건(LCR, Local Content Requirement)을 통상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시장 참여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23.4.)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는 자국 산업을 위한 보호무역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가 들어온 상황이 아닌데도 정부가 나서서 LCR를 없애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우리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날로 쪼그라드는 재생에너지 지원 “한국판 IRA 시급”』, 주간경향 통권 1524호, '23.4.).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한국에너지공단 규정)

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2조제4항 전단), ③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후단).

이는 주요국들이 자국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이용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내 생산 활성화 유인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에너지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개정안을 통해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면, 정부 주도의 면밀한 국산화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예산지원 등이 가능해져 설비의 기술력 향상 및 국산화율 제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국내 생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한 발전사업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내 생산 설비의 사용이 증가하고, 이는 해당 설비의 국내 제조역량 확대에 선순환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설비의 수입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에너지안보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목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규정들에 근거하여 현행 제5차 기본계획에 풍력터빈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고,⁸⁾

[표 2] 현행법의 관련 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8)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12.)에는 초대형 풍력터빈 및 부품패키지 국산화 기술개발 및 비식용원료 기반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국산화 등 설비·기술 등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중 국산화 관련 내용은 [참고 1] 참조

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원자력 진흥법」⁹⁾, 「전기사업법」¹⁰⁾ 등 다른 에너지 관련 법률의 경우에도 기본계획(또는 종합계획) 수립 시 설비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원자력 진흥법」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이용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이용에 필요한 사항

10)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생산 신·재생에너지 설비 우선적 사용 권고 및 해당 설비 사용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2조제4항)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우선적 사용 권고와 해당 설비 사용자 대한 재정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 외산을 국내산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어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위반으로 인한 통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¹¹⁾ 최저효율제¹²⁾ 및 탄소검증제¹³⁾ 등과 같은 현행 제도를 통해 저탄소·고효율의 국산제품 사용 제고를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11) 대법원은 유사 사례(국내 농축산물 우선 사용 조례)에서 수입산을 국내산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GATT 협정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함.

[대법원 2008.12.25. 선고, 2004추72 판결]

GATT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수입산품의 국내 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요건 등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조례안은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 제3조제1항, 제4항에 위반된다.

- 12) 저가·저품질 태양광 모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 1월에 도입되었으며, 국내 태양광업계의 기술력, 특수 모듈(다결정, 영농형 등) 제조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S표준에 최저효율(17.5% 이상)을 설정함. 최저효율제 개요는 [참고 4] 참조
- 13) 태양광 모듈 제조 소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검증하여, 국산 저탄소 태양광 모듈 보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태양광 모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kg·CO₂로 계량화하여 관리함. 탄소검증제 개요는 [참고 5] 참조

[표 3] 관련 협정 내용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3조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1. 체약당사자들은 내국세 및 그밖의 내국과징금과 상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규정·요건과 특정 수량 또는 비율로 상품을 혼합하거나 가공 또는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정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상품 또는 국내상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금지보조금

- 3.1 농업에관한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조의 의미내에서의 다음의 보조금은 금지된다.
 - 나.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 3.2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문 의 처

02)6788-5468

4. [산업혁신] R&D 혁신역량 제고 및 생태계 활성화 [P.24]

- ◆ 사업화 연계 R&D로 신재생에너지 新시장 창출에 기여
- ◆ 기업 경쟁력-고용 확대-세계시장 진출의 선순환 구조 마련

1 신재생 원별 유망분야 R&D 지원 강화

① (태양광) 경쟁력의 핵심인 기술력·경제성 강화 및 新서비스 개발

- 탠덤전지 등 초고효율 태양전지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R&D 집중 지원을 통한 차세대 시장 선점 및 산업생태계 자립도 제고
 - * 셀 효율 개선목표 : ('19) 23% → ('30) 35%
- 기업·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양산성을 검증하는 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국내 태양광 R&D 역량 강화
 - * (개요) 100MW급 파일럿라인,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기간) '20~'22, (예산) 253억원
 - * ①양산능력 검증, ②차세대 전지 공동개발, ③성능·효율 측정 및 공인인증 등 지원
- 건물 일체형(BIPV), 수상·해상 태양광 등 입지 다변화를 위한 신시장 기술개발

② (풍력) 초대형 풍력 터빈 및 부품패키지 국산화 기술 개발

- 초대형 블레이드(길이 100m, 8MW급), 카본 복합재 부품, 증속기, 발전기, 전력변환기 및 제어시스템 등 핵심부품 국산화
 - * 터빈 : ('19) 5.5 → ('30) 12~20MW / O&M 비용(연) : '30년까지 30% 절감
- 부유식 풍력 터빈용량 확대 및 부유체 기술개발·실증 등 추진
 - * ('30년 목표) 부유식 풍력 용량 : ('19) 0.75MW → ('30) 5~8MW / 실해역 실증

분야	기술개발 목표
태양광	- 글로벌 경쟁 돌파 고효율 태양광 개발 - 수상, 해상, 영농형 등 입지 다변화용 태양광 모듈 개발 - 초경량, 고감도 태양전지 개발 - Post-결정질 미래 원천기술 확보
풍력	- 풍력발전 핵심부품 경쟁력 강화 - 초대형 해상풍력기술 개발 및 실증 -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 및 실증 - 환경친화적 단지 개발 및 운영
수소·연료전지	- 수소차 충전소용 저가 수소 생산기술 상용화 및 그린수소 대량 생산기술 확보 - 대규모 육상수소 운송기술 - 고효율·저가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기술 확보
바이오	- 비식용원료 기반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국산화 - 물성 개선(Drop-in) 바이오연료 핵심기술 확보 - 항공, 선박용 바이오연료 양산기술 개발 및 실증 - 非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연료 생산 원천기술 확보
태양열	- 고효율·고신뢰성 전일사 태양열 집열 및 고밀도 축열 핵심기술 확보 - 태양열 기반 건물 및 산업용 냉·온열 공급시스템 기술 개발 - 수출형 대규모 태양열 발전시스템 상용화 및 600℃ 이상 흡수, 저장기술 개발
해양	- 해양에너지 상용화기술 개발 - ESS 연계 해양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 복합해양에너지 단지화 기술 개발
지열	- 지열에너지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열자원 탐사 및 평가기술 개발 - 천부/심부지열 저비용 천공기술 개발 - Low-GWP 냉매이용 고온용 히트펌프 유닛 개발 - 하이브리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및 저온구동 지열발전 시스템기술 개발
수력	- 수차 성능 향상 설계기술 개발(압력맥동, 캐비테이션, 유사마모 등) - Fish-friendly 프란시스 및 카플란 수차 설계 및 개발 - 수력 성능 검증을 위한 모델시험 및 현장 효율시험 기술 개발
수열	-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개발 - 수열 적용을 통한 막여과 수처리공정 개선 복합기술 개발 - 에너지 다소비 시설 적용 심층 저온수 활용기술 개발

제3조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1. 계약당사자들은 내국세 및 그밖의 내국과징금과 상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규정·요건과 특정 수량 또는 비율로 상품을 혼합하거나 가공 또는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정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상품 또는 국내상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4. 다른 계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계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그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에 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항의 규정은 상품의 국적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운송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기초한 차등적 국내운임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계약당사자도 특정 수량 또는 비율로 상품을 혼합, 가공 또는 사용하는 것에 관련된 내국의 수량적 규정으로서, 그 적용을 받는 특정 수량 또는 비율의 상품이 국내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함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또한 어떠한 계약당사자도 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내국의 수량적 규칙을 달리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지보조금

제 3 조
금 지

3.1 농업에관한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조의 의미내에서의 다음의 보조금은 금지된다.

가. 부속서 1(Re.4)에 예시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Re.5)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Remark 4) 부속서 1에서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언급된 조치는 이 규정 및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다.

(Remark 5) 이 기준은 보조금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출이나 수출수입과 결부된다는 것이 사실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충족된다. 수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보조금이 이 규정의 의미내의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나.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3.2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참고 4

최저효율제 개요

□ 제도 개요

- 저가·저품질 태양광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효율제’ 도입(‘20.1.28)
- 국내 태양광업계의 기술력, 특수 모듈(다결정, 영농형 등) 제조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S표준에 최저효율(17.5% 이상) 설정

< KS 인증제품 연도별 평균효율 추이 >

(단위 :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8.2	18.6	19.2	19.6	20.4	20.9
대기업	18.0	18.5	19.0	19.55	20.4	21.0
중소/중견	18.1	18.6	19.3	19.4	20.1	20.7
수입	18.4	18.6	19.3	19.8	20.5	20.9

□ 추진실적

- (‘20.1.28) KS표준(KS C 856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 개정
 - 시험항목 중 최저효율(출력) 기준을 설정,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KS인증 취득 불가 및 인증취소*
 - * 저가·저품질 중국산 태양광 모듈 195개 취소(2021.1.28.)
- (‘20.3.20)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 보급지원사업 적용
 - 적용대상 : 주택, 건물, 융복합 지원사업

□ 제도 개요

- 태양광 모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kg·CO₂으로 계량화하여 관리하는 제도

□ 관련 근거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①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산업부고시)
- ②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공단 내부규정)
- ③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센터 공고)

□ 제도 내용 : 탄소검증 대상 및 절차

- (검증대상) 제조공정 및 제반시설을 갖춘 국내외 태양광모듈 제조사
- (검증범위) 모듈 주요부품인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셀, 모듈, 부자재(백시트, EVA, 프레임, 유리)에 한함
- (검증방법) “표준배출계수 평가방식” 및 “LCA 방식” 중 기업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검증 신청(동일모델 2방식 모두 신청 가능)
 - * 표준평가방식 : 국가별, 소재·부품별 표준배출계수를 활용하여 탄소배출량 평가
 - ** LCA(Life Cycle Assessment) :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투입물, 산출물, 잠재적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기법

□ 추진 실적

- 저탄소 태양광 모듈 증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1,401 모델 검증)
 - * 모델 검증 현황(건) : ('20) 235 → ('21) 446 → ('22) 522 → ('23.6) 198('23.6)